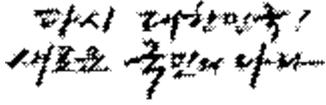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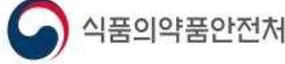


		<h1>보도자료</h1>		
				
보도 일시	2025. 4. 3.(목) 12:00 <4. 4.(금) 조간>	배포일	2025. 4. 2.(수)	
담 당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서영호 팀 장(043-880-5831) 김성유 조사관(043-880-583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 장(043-719-2010) 홍정미 연구관(043-719-2032)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반려동물 인구 증가·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위생·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함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약 6,840개(네이버의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갈수있어 강아지도’) 등록 업체 수(‘25.3.))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231개 매장 규제샌드박스 심의 완료, 108개 매장 영업 개시(‘25.1.)

※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실태를 비교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대비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위생관리 중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 매장(현재 108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전·위생관리 사례】

조리장 반려동물 출입 제한 시설	반려동물용 식기 별도 구비	반려동물 이동 제한용 고정 시설	제공 음식에 덮개 조치
			

□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허용하는 음식점 일부 안전·위생관리 미흡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한편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위생관리 미흡 사례】

【위생관리 양호 사례】

조리장 출입제한 미조치	음식점 내 환기 조치	
	 (주기적 환기)	 (공기청정기 비치)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고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 이동 제한 미흡 사례 】

【 이동 제한 조치 사례 】

반려동물 이동 방치	반려동물 전용 가구 비치
	

□ 반려동물 인구 증가·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운용 필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족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 만큼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반려동물 동반 임의 허용 음식점 조사 결과



< 불임 > 반려동물 동반 임의 허용 음식점 조사 결과

1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참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 시범사업
- (사업내용) 반려동물과 소비자의 식품접객업소 동반 출입 허용
 - (조건) ①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 및 소비자가 출입 선택, ②동물 출입 시 식품위생, 가축전염병·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 (기간) '23.4.~

2 조사 결과 요약

- 조사 대상 : 임의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수도권 내 식품접객업소(19개소)
- 조사 방법 : 규제 실증특례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준용 조사

1. 영업장 반려동물 출입관리 실태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고지) 조사대상 19개 중 10개(52.6%) 음식점은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설임을 고지하고 있었으나, 9개(47.4%)는 별도 안내가 없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시설임을 고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시설 고지 여부】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음식점 수	10개 (52.6%)	9개 (47.4%)	19개 (100%)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고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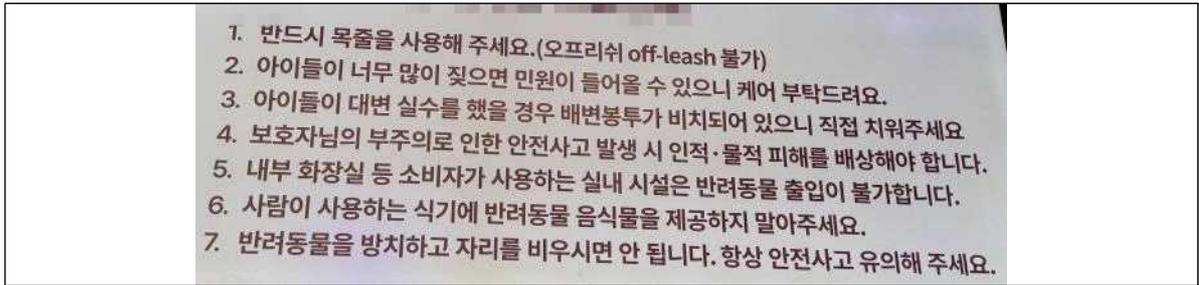


- (준수사항 고지) 조사대상 19개 중 3개(15.8%) 음식점만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소비자에게 영업장 내 준수사항을 고지했고, 16개(84.2%)는 별도 고지를 하지 않음.
-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시설임을 고지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 고지 여부】

구분	안내	미안내	계
음식점 수	3개 (15.8%)	16개 (84.2%)	19개 (100%)

【준수사항 고지 사례】



2. 영업장 위생관리 실태

- (식기 관리) 조사대상 중 반려동물용 메뉴를 운영하거나 반려동물에게 물그릇을 제공하는 9개 음식점 모두 사람용과 반려동물용 식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일회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반려동물용과 사람용 식기 구분-사용

【반려동물용 식기 구분 여부】

구분	구분	미구분	계
음식점 수	9개 (100%)	0개 (0%)	9개 (100%)

【반려동물 식기 구분 사례】



- (조리장 출입금지 시설 설치) 조사대상 19개 중 3개(15.8%) 음식점은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 또는 문 등을 설치했으나, 16개(84.2%) 음식점은 별도 조치가 없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금지

【반려동물의 조리장 출입금지 조치 여부】

구분	조치	미조치	계
음식점 수	3개 (15.8%)	16개 (84.2%)	19개 (100%)

【반려동물의 조리장 출입금지 조치·미조치 사례】



- (실내 환기) 조사대상 19개 중 12개(63.2%)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등을 통해 실내를 환기하고 있었으나 7개(36.8%) 음식점은 환기 조치를 하지 않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 청정기 사용 시 상시 가동

【음식점 내 환기 조치 여부】

구분	조치	미조치	계
음식점 수	12개 (63.2%)	7개 (36.8%)	19개 (100%)

【음식점 내 환기 조치 사례】



- (음식물 이물 혼입 예방) 조사대상 19개 음식점 모두 소비자에게 음식물 제공 시 덮개를 씌우지 않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 시 반려동물의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함 (다만, 손님 요청이 있는 경우 덮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물 혼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지)

【음식물 이물 혼입 예방(똥개 등) 조치 여부】

구분	조치	미조치	계
음식점 수	0개 (0%)	19개 (100%)	19개 (100%)

【음식물 이물 혼입 예방(똥개 등) 조치·미조치 사례】



- (위생용품 비치) 조사대상 19개 중 17개(89.5%) 음식점은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2개(10.5%) 음식점은 물티슈와 손소독제 모두 비치하지 않음.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출입구에 비치된 소독제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출입

【위생용품 비치 여부】

구분	비치	미비치	계
물티슈	17개 (89.5%)	2개 (10.5%)	19개 (100%)
손소독제	2개 (10.5%)	17개 (89.5%)	19개 (100%)

【위생용품 비치 사례】



3.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실태

- (반려동물 이동금지) 조사대상 19개 중 11개(57.9%) 음식점은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 및 제재 등의 조치를 했으나, 8개(42.1%) 음식점은 별도 조치가 없음.

- (반려동물 전용 식탁·의자 등) 조사대상 19개 중 4개(21.1%)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해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함.

※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 외에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 및 타 동물과 접촉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길이 유지

【반려동물 이동금지 조치 여부】

구분	조치	미조치	계
이동제한	11개 (57.9%)	8개 (42.1%)	19개 (100%)
전용 식탁 등 비치	4개 (21.1%)	15개 (78.9%)	19개 (100%)

【반려동물의 이동금지 미조치 사례】

	
반려동물 이동금지 미조치 사례1	반려동물 이동금지 미조치 사례2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소파 등 비치 사례】

	
반려동물 전용 식탁	반려동물 전용 소파

<반려동물 보호자 주의사항>

1.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한다.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go.kr) - 현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검색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광견병 등)을 완료한 후 방문한다.

3. 맹견 및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동반하지 않는다.

4. 출입 시 반려동물의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5. 반려동물이 음식점 내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반려동물 전용 공간(의자, 케이지 등) 외에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입마개를 씌운다.

7. 반려동물에게 음식물을 줄 때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에 담지 않는다.

8. 반려동물의 배설물 및 매너벨트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쓰레기통에 즉시 폐기한다.

9. 화장실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씻기지 않는다.

10. 어린이 놀이 공간에 반려동물과 출입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이 없는 일반 소비자 주의사항>

1.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불안감이 있을 경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출입을 자제한다.

2.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3. 반려동물이 있는 주변에서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반려동물이 놀라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5. 반려동물 관련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음식점 직원에게 알린다.